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2022. 4. 20. 전규안(숭실대학교)

정준희(대구대학교)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V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목차

- I.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국내외 동향
- Ⅱ.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본 방향
- Ⅲ.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방안
- IV.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설립방안

목차

- I.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국내외 동향
- II.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본 방향
- Ⅲ.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방안
- IV.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설립방안

- □ (IFRS재단의 동향) IFRS재단은 2021년 11월 3일 COP26에서 국제 표준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을 발표
 - IFRS재단은 초대 ISSB 위원장으로 엠마뉴엘 파베르(Emmanuel Faber, 프랑스 다국적 식품기업인 다농의 前 대표이사) 선임
 - ISSB 부위원장으로 수 로이드(Sue Lloyd, IASB 부위원장) 선임
 - ISSB 위원장의 특별고문으로 재닌 길롯(Janine Guillot, VRF의 CEO) 선임
 - IFRS재단은 주요 지속가능성 기준제정기구인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및 VRF(SASB와 IIRC)와의 합병을 통해 각 기구의 핵심역량을 활용할 예정
 - TRWG(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가 개발한 기후 및 일반 요구사항 기준 시안(prototype) 발표 (ISSB 기준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TRWG: IASB, CDSB, TCFD, VRF, WEF로 구성된 기술적준비작업반
 - 기후 관련 공시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s Prototype)
 - 일반요구사항시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Prototype)

- IFRS재단과 CDSB 합병 완료('22.1.31일), VRF와의 합병이 진행 중('22.6월 완료 예정)
- IFRS재단과 GRI의 협력 약정 체결('22.3월)
-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Exposure Draft) 발표('22.3.31일)
 - IFRS S1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 ISSB 기준이 완전히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이 다루지 않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및 공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SASB 기준의 공시 주제 및 CDSB 체계 및 적용지침 활용)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식별, 측정, 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 공개초안의 전반적인 개요를 담은 Snapshot 문서 발표
 - 공개초안을 기존 시안 및 TCFD 권고안과 비교한 문서도 함께 발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2022. 4. 1.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그림] IFRS재단의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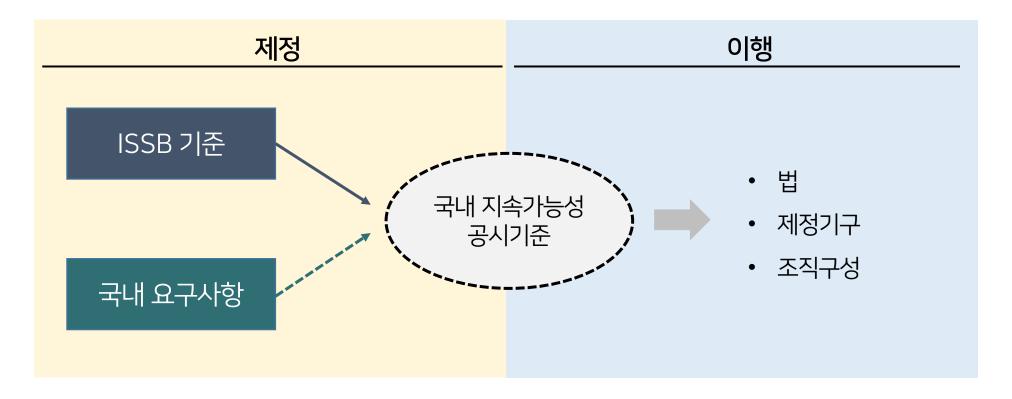


출처: IFRS Foundation, 2021, Meeting investors' needs for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 □ (회계기준원의 대응) 회계기준원은 ① IFRS재단의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② ISSB 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칭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준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중(2021년 8월~)
- □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방안 및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KSSB) 설립 관련 정책제안서(Green paper)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KSSB 준비위원회 개요)

•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준비위원회의 필요성



KSSB 준비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 목적 IFRS재단의 ISSB 설립 및 지속가능성기준 제정 움직임에 대응하고, 국내의 ESG정보 공시 의무화 추진 과정에서 ISSB가 제정할 기준의 도입 및 이행의 준비 필요
- 구성 지속가능성 공시 환경, 기준제정 및 도입절차, 정책연구, ESG투자 등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준비위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6인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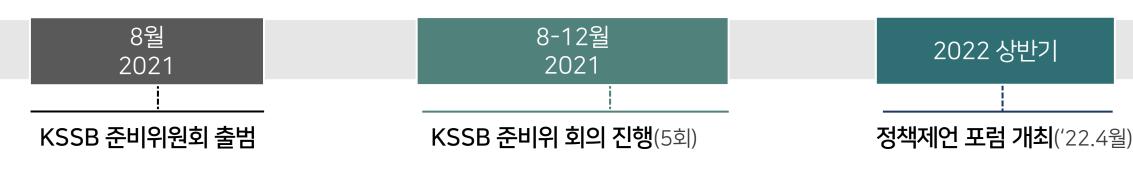
| 서정 의 위원정 | | | 김광조 | 이원일 | 이웅희 |
|-----------------|-----|---------|------------|-----------|------------------------|
| 학계 및 기준제정 | ~ ' | ll 금융기관 | 기업 (SK) | 한국 거래소 | 회계 기 준 원 |

KSSB준비위원회 위원(총 6인)

- 1) KSSB 설립 필요성 및 역할 논의
- 2)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 3) 국내 기존 규정 간 상호운용성, 회계정보와의 연계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등 검토
- 4) ISSB 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방안 관련 정책 제언



- KSSB 준비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 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방향 및 기준 제정의 범위 검토 및 제안
- ② KSSB 설립의 필요성, 설립 관련 법적근거, KSSB의 역할 및 업무범위 검토 및 제안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방안 제언
- KSSB 설립 필요성 및 방향성 설정

- (1) 정책 제안서 구성 논의(연구 회의와 병렬 진행)
- (2) IFRS재단 프로젝트 진행상황 공유
- (3) IOSCO 보고서 논의
- (4) KB금융그룹 및 대신경제연구소

⇒ 정책제안서 발표 및 의견수렴





목차

- I.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국내외 동향
- Ⅱ.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본 방향
 - 2.1 ISSB 공시기준의 성격
 - 2.2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도입방안
- III.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방안
- IV.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설립방안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본 방향

2.1 ISSB 공시기준의 성격

- 口 (IFRS 기준 체계) 일반목적의 재무보고기준인 IFRS 기준 內
 - 1 IASB의 IFRS 회계기준과 2 ISSB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구성





-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가치(enterprise value)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투자자 중심의 정보공시 목적
 - 공시기준이라는 명칭을 통해 기존의 지속가능성보고(다중 이해관계자 중심) 기준과 명확히 구분
 - TCFD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정성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 정보 강조
 - ⇒ GRI 기반의 기존 지속가능성보고서 정보와 구별
- □ TRWG에서는 **4가지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

Proposed strategic direction based on feedback









[그림] TRWG 4가지 전략 방안



- □ (① 투자자 중심)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Sustainability Disclosure')는 초창기에는 '투자자 중심의', '기업가치 평가에 유용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 □ (② 환경·기후에 (우선)집중) 환경·기후에 (우선)집중할 예정
 - 기준 제정 범위는 E 파트 중 기후부분을 구체화하고, 나머지 지속가능성 사안(E의 다른 분야 및 S와 G분야)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구체화할 예정. 다만, 기후 다음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는 자연(nature), 물(water), 토지(land) 분야일 것으로 여러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음.
- □ (❸ 국제 기준선(Global baseline) 접근법) 국제 기준선 접근법*을 통해 ISSB 기준을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의 기준선으로 제안
 - * 해당 접근법에 대해 IOSCO, FSB, WEF, G7, G20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강력한 지지 표명
 - ISSB 기준을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위한 최소한의 공시기준으로 하며, 각 국가별로 법령 및 규제에 따라 공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예: EU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 (④ 기존 이니셔티브와 연대를 강화하고 프레임워크 적극 활용)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에서 기준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핵심 옵저버 역할
 - 기후 관련 보고서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시안 개발.
 TCFD와 통합을 통해 기술전문성 및 내용이 새 이사회(ISSB)로 이전 검토.
 - VRF(IIRC와 SASB 통합 표준)와 MOU 및 '22.6월 통합 추진
 - CDSB 및 CDP 프레임워크 통합
 - WEF와 MOU 및 자문
 - GRI와 MOU 및 협업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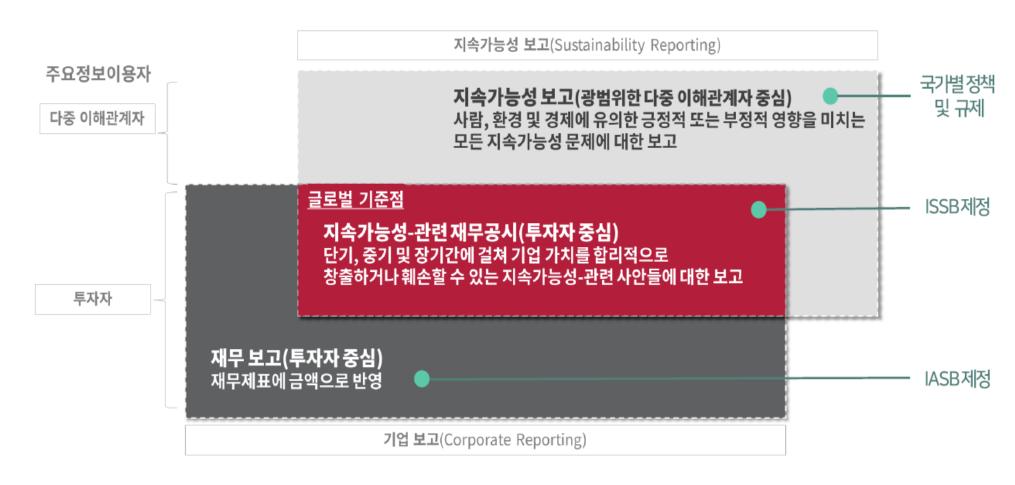
2.2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도입방안

- □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와의 관계 정립 필요)** ISSB 기준은 '주요 정보이용자'를 '투자자(investor)'로 본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다중 이해관계자(broader multi-stakeholder)'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현행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성격이 다름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외부 ESG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던 기존의 자발적 공시 와 달리, 외부 ESG요소(특히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예: 사업모형, 전략, 위험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

[표] 주요 정보이용자 및 기준의 성격에 따른 구분

| 기준의 성격 주요 정보이용자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 지속가 능 성 보고 |
|--------------------|---------------|-----------------------|
| 투자자 | ISSB 기준 | |
| 다중 이해관계자 | | 현행 지속가능성보고서 |





[그림] 재무보고와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의 성격

출처: 이웅희, 윤나영.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국제 표준화를 앞두고…". 한국회계기준원 발표자료(2021. 8. 31.)



- □ (ISSB 기준의 도입가능성) 우리나라에서 KSSB가 설립되면 ISSB가 제정한 기준을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
 - ISSB 기준에 대하여 IOSCO, WEF, FSB, G7, G20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지지
 - 국제 기준선 접근법을 통해 ISSB 기준을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의 기준선으로 제안하고, 각 국가에서는 ISSB 기준을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위한 **최소한의 공시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ISSB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도입방안 문제, ISSB 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기준 제정 문제 등이 존재
- □ (ISSB 기준 제정과정의 참여) ISSB가 기준 제정과정에서 발표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안건협의문서 등에 대해 분석 및 검토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견을 적극 개진 필요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운영
 -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연구용역 진행



- □ (ISSB 기준 도입시 고려사항) ISSB 기준은 환경 · 기후에 (우선)집중하고, 국내에 필요한 '투자자(investor) 중심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기준이 모두 제정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ISSB가 제정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전부 제정되기 전에 국내에 필요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전부 제정하더라도 국내에 필요한 별도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필요성 검토
 - ISSB 기준이 제정되었으나 KSSB가 설립되지 않은 동안에 ISSB 기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방안 고려 필요예) 한국회계기준원이 번역 제공. 기업은 자율 공시 등
- □ **(핵심지표와 추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안)** '핵심지표+추가지표'를 배합하여 운용하는 방안 고려
 - 핵심지표: 정량, 표준화(통일) (예: CO2 배출량, 온실가스 환산량 등)
 - 추가지표: 정량 + 정성. 비표준화 (예: CO2 배출 집약도, 위험 관리 등)
 - 핵심지표만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추가지표는 별도의 공시 위치로 공시하는 방안 등

- □ (지속가능성 공시(보고) 방법) ISSB 기준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보고) 방법 예시
 - (의무공시 1) ISSB 기준을 반영하여 KSSB가 제정한 공시기준에 의한 공시 (예)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
 - (의무공시 2)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의한 의무 보고
 - (자율공시) 기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예: GRI 기반) 다중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보고

- □ 잠정(안) (1)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본 방향)
 -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기존 재무보고와의 연계성 제고,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국내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ISSB 기준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준선(baseline)으로 채택
 - ISSB 기준에 따라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기준선으로 출발하고, '다중 이해관계자 중심' 및 '지속가능성 보고'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잠정(안) (2)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도입방안)

- ① 국내에서 ISSB 기준만을 도입하여 제정할 것인지,
 - ② ISSB 기준 외의 기준을 추가로 제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
- 국내에서 '② ISSB 기준 외의 기준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을 전제 시, ISSB 기준의 제정 방향에 따라 여러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음
- (대안 1) ISSB 기준을 최소한의 공시기준, 국가별로 법령 및 규제에 따라 공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구성
 - ① ISSB 기준: ISSB 기준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최소한으로 채택
 - ② KSSB 자체 기준: ISSB가 향후 제정할 기준 + ISSB가 제정하지 않는 기준 (KSSB 자체 기준의 제정 여부, 제정 범위, 제정 방법 등에 여러 대안이 존재)
- (대안 2) ISSB 기준의 선택적 도입이 가능한 경우
 - ISSB에서 요구한 핵심사항 또는 국내 실정에 맞는 상황만 의무,
 나머지는 자율적 도입 혹은 국내 기준의 새로운 제정방안 검토

목차

- I.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국내외 동향
- II.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본 방향
- Ⅲ.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방안
 - 3.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적용대상
 - 3.2 지속가능성 공시위치
 - 3.3 공시상 보고기업
 - 3.4 공시기준의 형태
 - 3.5 ISSB 공시기준 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IV.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설립방안



3.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적용대상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대상 대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의무 적용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이 존재

[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대상의 가능한 대안

| 대안 | 비고 |
|----------------------|-----------------------------------------------------------------------|
| 1안: 상장법인(자산 2조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과 동일 |
| 2안: 상장법인(코스피) | 금융위의 ESG보고서 발행대상(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2030년 전체 코스 피 상장사 의무화)과 일치 |
| 3안: 상장법인 전체(코스피+코스닥) | |
| 4안: K-IFRS 적용대상법인 | 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 및 금융회사 |
| 5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주권상장법인, 주권 외의 지분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의 소유주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등 |
| 6안: 외부감사대상법인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



- □ (**일괄 도입방안** 또는 **단계적 도입방안**) '일괄 도입방안' 또는 '단계적 도입방안'이 가능
 - 예를 들어, "K-IFRS 적용대상법인"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 (1) K-IFRS 적용대상법인에 일괄 도입하는 방안 또는
 - (2) 코스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후 코스닥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 도입방안**이 바람직
 -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은 자율적 도입이 가능
 - 의무적용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법적 책임 측면을 고려한 적용대상 설정이 필요
 - 도입 초기에는 의무적용 대상과 공시범위를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 도입 초기에는 자발적 공시에 초점을 두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의무화하는 단계별 공시범위 확대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 □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
 - "비재무정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 적용대상: 임직원 500인 초과 기업(상장기업, 은행, 보험회사, 정부가 공익실체로 지정한 기업)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안(Proposal) 발표('21. 4. 21일)
 - 보고대상 기업의 확장 (**대기업 및 상장회사**)
 -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공시
 -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금융상품의 환경 목표 관련 정보 및 투자 비율(예: Taxonomy에 부합하는 자산 비율, 포트폴리오 등)의 공시 요구 (Taxonomy Regulation 5-6항) ('21년 중 정보공시 요구)
- □ 잠정(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적용대상)
 -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상장법인의 단계적 도입
 - 일정기간 유예 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 코스피 → 코스닥 순으로 단계적 도입

3.2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위치

- □ **(지속가능성 공시 위치 대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위치(location of information)**는 ISSB 기준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
 - '일반 요구사항': 일반목적재무보고(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의 일부로 공시할 것을 요구
 - 국가별 규정에 따라 경영진설명서(management commentary),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운영 및 재무 검토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 전략보고서(strategic report) 등을 통해 공시 가능
 - ISSB 기준이 제정되면, 도입 시기와 적용대상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무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투자자 중심에 대한 정보는 ISSB 기준이 최소한의 의무표준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
 -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위치의 형태에 따라 기존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발행하던 현행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존립 여부, 성격, 포함되는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안 | 내용 | 공시대상 | 비고 |
|---------------------------------|--------------------------------------------|-------------|-----------------------------------|
| 1안: 재무제표 반영(1): 재무제표 본문 | 기존의 회계보고 체계에 화폐가치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추가 | 투자자 | 측정의 문제가 중요. 중장기 과제 |
| 2안: 재무제표 반영(2): 재무제표 주석 | 기존의 회계보고 체계에 지속가능성 공시기 준을 추가 | 투자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
| 3안: 사업보고서 반영 |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반영 | 투자자 | SASB는 MD&A, F-40을 통해 사업보고서에 반영 |
| 4안: 별도 지속가능성보고 서 발행 | 핵심사항만 별도 지속가능성보고서 로 발행 | 투자자 | 2개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존재 가능 |
| 5안: 새로운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포함 | KSSB 기준을 투자자 중심의 지속 가능성보고서에 포함 | 투자자 | 투자자 중심의 별도의 지속가능성 공 시기준 제정 |
| 6안: 현행 지속가능성보고 서에 포함 | KSSB 기준을 현행 (자발공시) 지속 가능성보고서에 포함 | 다중 이해관계자 | 다중 이해관계자 중심의 별도의 지속 가능성 보고기준 |

- □ 3안(사업보고서 반영): 사업보고서의 본문 또는 첨부서류로 포함하는 방안
 - 3-1안: **사업보고서 본문**에 반영하는 방안(자본시장법(제159조 제2항) 또는 시행령(제168조 제3항) 개정 필요)
 -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에 추가하는 방안 등
 - 핵심지표 및 수치화 가능한 부분을 본문에 반영하고 추가로 목표치, 시나리오 등 경영자의 재량권 및 가정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은 사업보고서 본문에 반영하지 않는 절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3-2안: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포함하는 방안(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8조 제6항) 또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현행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 (위원회)의 의견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정관 등
 - 3-3안: '**사업보고서 본문 + 별도의 공시위치'**를 이용하는 방안
 - 별도의 공시위치: 별도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의한 의무 보고 등

- □ 사업보고서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상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한 인증문제 **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현재의 사업보고서에도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외부인증을 받지 않은 정보가 모두 포함되므로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보고가 포함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량**과 **법적인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공시되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본문으로 공시하기 어려움
 -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또는 '사업보고서 본문 + 별도의 공시위치' 등 활용하는 방안 고려
 - 잘못된 공시의 경우, 사업보고서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등)' 등을 부담 가능
 - 별도의 공시위치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적용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보다 축소된 '코스피' 또는 '코스피+코스닥'으로 하는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지속가능성 공시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 □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위치
 - 유럽 NFRD(CSRD) 공시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입각해 **사업보고서** 또는 **별도의 보고서**(사업보고서 공 시 후 6개월 이내)를 통해 공시
 - 유럽 SFDR 공시(금융회사)
 - 관련 금융상품의 환경 목표 관련 정보 및 투자 비율(예: Taxonomy에 부합하는 자산 비율, 포트폴리오 등) 의 공시 요구 (Taxonomy Regulation 5-6항) (2021년 중 정보공시 요구)
 - (공시형태) EU Taxonomy 연계 정보의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편의성 있게 제공할 것을 요구

- □ 잠정(안) (지속가능성 공시 위치: 3안)
 - 사업보고서에 반영하는 방안
 - **(3-1안) 사업보고서 본문**에 반영하는 방안
 - (3-2안)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포함하는 방안
 - (3-3안) '사업보고서 본문 + 별도의 공시위치'를 이용하는 방안
 - 핵심지표는 사업보고서 본문에 보고하고, 그 외 지표는 별도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다른 공시위치**(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의한 의무보고 등)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
 - KSSB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계량 데이터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표현되는 중요사항들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안
 - 잠정(안) 중 공시 위치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업의 부담**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3.3 공시상 보고기업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고기업 대안)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고기업(reporting entity) 대안은 ESG 항목별, 산업별, 시장별(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등)로 다르게 적용 가능

[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가능한 보고기업 대안

| 대안 | 내용 | 비고 |
|----|------------------------------------------------------|---------------------|
| 1안 | 개별회사 (지배회사, K-GAAP과 동일) 중심으로 보고기업 반영 | S, G 일부 항목에 한정 |
| 2안 | 연결실체(지배회사와 종속 회사, K-IFRS와 일관됨) | |
| 3안 | 연결실체에서 국내사업장에 국한 | 현재 국내 대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 |
| 4안 | 공급사슬(Value Chain)에 존재하는 주요 관계사 및 협력사 | TCFD 권고사항 |
| 5안 | 공급사슬(Value Chain)에 존재하는 주요 관계사 및 협력사 중 ISSB 기준 도입 기업 | |

- □ ISSB의 **'IFRS S1 일반 요구사항'**에 의하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 결실체(다만, 외부 파트너와의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공시)
- □ 기타 고려 사항
 - (기업규모 및 유형에 따라 연결범위를 달리 정하는 방안) 예를 들어, E 보고서의 경우 자회사 또는 Value Chain(관계회사 및 협력사 등)에 포함된 회사 중 환경공단의 온실가스배출권 할당을 받는 기업은 보고사항 에 포함하고, S와 G는 선택
 - 환경공단의 온실가스배출권 할당을 받는 기업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3,000tCO2-eq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CO2-eq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
 - 금융위는 E(환경)·S(사회)·G(지배구조) 정보에 대하여 '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적으로 공시 요구
 - 2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의 경우 Value Chain(4안 또는 5안), 나머지 기업은 1안~3안 선택과 같은 대안 존재

- □ 잠정(안)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고기업)
 - (원칙: 2안) '연결실체(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ISSB 기준의 제정방향과 일치
 - (예외1: 3안) 현재 다수의 기업이 '연결실체에서 국내사업장에 국한(3안)'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기업은 2안을 채택, 작은 기업은 3안에서 단계적으로 2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
 - (예외2: 4안)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금융업의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한정하여 4안 채택도 가능

3.4 공시기준의 형태

- □ 기준의 형태는 ① IFRS와 연동하여 신규 기준서로 첨부되는 방안과 ② 신규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설정(예를 들어, 'IFRS 기준서 xx')하는 방안, ③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서를 별도 설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
- □ 공시기준 번호
 - 1안: 'IFRS 기준서 xx'로 공시되는 경우
 - 1안 채택시 지속가능성 공시를 화폐가치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외의 내용을 담기 매우 어려움. 또한 ISSB의 존재감이 약화.
 - 2안: 'ISSB 기준서 xx'로 공시되는 경우
 - 규정을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으므로 IFRS에서는 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은 확답할 수 없음
 - 3안: 'IFRS 공시원칙 xx'로 공시되는 경우
 - 현재 ISSB의 공개초안 IFRS S1, IFRS S2
- □ 잠정(안) (공시기준의 형태)
 - KSSB에서는 IFRS와 ISSB의 방향을 따라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5 ISSB 공시기준 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정립 여부
 -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적용범위 검토(예: 중소기업은 자발적 선택 허용, 환경 기준의 경우에만 의무 적용 등)
- □ 보고기업과 관련하여 금융권에 한정하여 Value Chain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PCAF 제안)
 - 공개초안에서 Scope 3에 대한 요구
- □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단계적 도입)** 지속가능보고서 인증 성격 및 인증범위, 인증인의 책임 명확화
 - 인증의 범위, 인증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 나아가 표준감사시간 등을 지속가능서 보고서에도 적용할지 등 세부 지침 마련 필요
- □ 그 외 추가 검토사항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된 공시기준 적용
 - ESG 보고서의 인증, 소송, 감독사항 등을 고려한 보고기업(보고범위) 결정
 - EU 공급망 공시제도 도입에 앞서 국내 실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 기존 재무보고와의 연계성 검토



목차

- I.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국내외 동향
- Ⅲ.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본 방향
- III.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방안
- IV.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설립방안
 - 4.1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 4.2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설립방안
 - 4.3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 설립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개정방안
 - 4.4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4.1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 □ (KSSB의 설립 필요성) ISSB의 설립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 필요
 - I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원활한 국내 도입과 ❷ ISSB 기준 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가칭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설립이 필요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혼란을 해소하여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일된 역할을 수행하는 KSSB의 설립이 필요
 - **재무보고와 비재무보고의 연계성** 강화 중요 ⇒ **기존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연계**가 중요
 - [해외 사례] 기존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EU, 호주 등) 또는 별도의 제정기구를 신설하여 제정(캐나다 등)할 예정임

- □ (**KSSB의 역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KSSB)를 설립하여 다음의 역할 수행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 ISSB 기준 도입
 - ISSB 기준 외의 국내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단기적으로는 ISSB 기준 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내에 적용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중장기적으로는 ISSB가 제정하지 않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 ② IFRS재단 및 ISSB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 IFRS재단과 ISSB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초기 재정지원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선제적 도입 선언 등도 고려
 - ❸ ISSB 위원 후보 발굴
 - 기업 및 투자자 출신 이외에도, 지속가능금융•개발 관련 정부부처, ESG 관련 국제기구 및 평가, 검증기관 소속 전문가 등도 후보자로 발굴
 - ISSB의 한국 위원 진출 추진 및 KSSB 소속의 전문 스태프의 ISSB 파견 고려

□ 잠정(안) (KSSB의 설립 필요성과 목적)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칭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설립
- KSSB의 비전과 목표(mission statement) 설정
 - [KSSB의 비전]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세계 일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
 - [KSSB의 목표]
 - (1) 비교가능하고 일관된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 (2)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과 제정 참여를 통한 기여
 - (3)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4.2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설립방안

□ (ISSB와 KSSB 비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설립방안과 주요 논점을 ISSB와 비교하여 알아봄

[표]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 설립 동향

| 국가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 | | |
|-----|------------------------------------------------------------------------------------------------------------------------------------|--|--|
| EU | 유럽위원회는 CSRD 적용에 활용할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으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의 기준용할 예정임을 발표('21.5.17일) ⇒ PTF-ESRS에서 첫 번째 초안 발표('22.2.20일) | | |
| 호주 | 기존 회계기준제정기구인 AASB(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도 제정할 예정임을 발표('21.11.22일) | | |
| 캐나다 | 개나다·별도의 CSSB(Canadian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출범 예정('21.12월)·기존 캐나다 회계기준제정기구인 AcSB(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연계성을 가질 예정 | | |

[표] ISSB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KSSB) 설립방안 비교

| 구분 | ISSB | KSSB | 장단점 |
|----|-----------------------------------|-------------------------------------------------------------------|------------------------------------------------------|
| 조직 | IFRS재단 內 IASB와 유사한 기구 | 1안: 한국회계기준원 內 현행 KASB와 유사한 별도의 "(가칭)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 ·ISSB 설립 방향과 일관됨 ·기준 제정의 전문성 활용 ·재무보고와의 연계성 제고 |
| | | 2안: 기존의 KASB가 겸하는 방안 | ·비용 절감 ·신속한 적용가능성 ·전문성 부족 문제 |
| | | 3안: 회계기준원과 별도의 기구로서 KSSB 설립 |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 ·재무보고와의 연계성 부족 문제 |
| 인원 | 현 14명 (20명으로 확대 요구) | [조직 1안 가정] 5-7명(원장과 상임위원은 겸직, 비상임위 원 4-6명은 별도 운영) ⇒ 향후 9명으로 확대 | KASB: 9명 (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7명) |
| 역할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 기준 제정(ISSB 기준) | 1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2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 ISSB 기준 이외의 기 준 제정 | |
| 기금 | seed capital, annual contribution | 회원출연금수익, 법정분담금수익, 법정기금전입수익 등 | |

- □ 잠정(안) (KSSB의 설립방안: 1안)
- 한국회계기준원 內 현행 회계기준위원회(KASB)와 유사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칭) 설립
- 한국회계기준원 內 KSSB를 설립함으로써 얻는 장점
 - IFRS재단의 ISSB 설립 방향과 일관됨
 - 현행 회계기준위원회(KASB)의 기준 제정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 재무보고와 비재무보고(지속가능성보고)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음

4.3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 설립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개정방안

- □ (한국회계기준원의 현황) 외부감사법 제5조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제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회계기준제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함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과 같음
 -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 **(KSSB 설립 시 법률 및 규정 등 개정사항)** KSSB의 설립에 따라 외부감사법과 시행령,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관 등이 개정될 필요
 -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KSSB의 설립 형태에 따라 달라짐



- KSSB 설립을 포함하는 외부감사법 개정 시 **외부감사법**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중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외부감사법 개정 시 회계기준과 회계감사 관련 내용 외에 지속가능성 기준이 추가되는 것 ⇒ 외부감사법의 정합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 ISSB의 지속가능성 기준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제정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방안: 회계기준원의 설립근거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 가능

- □ 지속가능성 공시위치와 KSSB 설립 근거법의 관계
 - 지속가능성 공시위치의 규정에 따라 KSSB 설립근거법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예산확보방안과도 연결됨 예) 사업보고서에 보고하는 경우: 근거법이 자본시장법이 되고, KSSB의 설립근거도 자본시장법이 될 수 있음

- □ 잠정(안) (KSSB 설립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개정방안)
 - 한국회계기준원 내 현행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와 유사한 "(가칭)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를 설립하고, **자본시장법**에 근거규정과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4.4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 □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보고)기준 제정기관과의 협력방안)**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보고)기준 제정기구와의 협력방안 마련
 - IFRS재단 및 ISSB와의 협력방안: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
 - IFRS재단 및 ISSB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 ISSB 위원 후보 발굴
 - ISSB 기준 도입
 - IFRS재단 및 ISSB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예: GRI 등)과의 협력방안 마련

-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보고)기준 제정기관과의 협력방안)**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보고)기준 제정기구와의 협력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단계적 의무화에 따른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행하는 한국거래소와의 협력방안
 - 'ESG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ESG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의 협력방안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금융감독원 등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 (해외 사례 참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해외 기구설립 동향 등 참조
 - EU와 호주는 각각 기존 회계기준제정기구인 EFRAG와 AA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도 함께 제정할 예정이며, 캐나다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

Thank you





